의안번호	2206838
의 뢰 인	박해철 의원
회 답 일	2025.1.6.
추계번호	24B6181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정의)	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(제1항) 6. "통상임금"이란 근로자에게 지급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정기적·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, 일급 금액, 주급 금액,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(정의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– 현시점에서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화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

2. 상세 사유

❑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무수당 혹은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 등 수당이나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며[1] 개정안은 "통상임금"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통상임금에 근거한 사업의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

○ 다만,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재정사업(육아휴직급여, 출산휴가급여 등) 대상자의 통상임금이 달라질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

1) 해고예고수당(「근로기준법」 제26조)
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(「근로기준법」 제56조)
연차유급휴가수당(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제5항)

현시점에서 그 변화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○ 참고로, 동 조항에 근거한 주요 재정지출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음

[육아휴직급여]

-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95조(육아휴직 급여)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함
  1.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: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. 다만,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,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
  2.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: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. 다만,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,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
  3.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: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. 다만,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,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

[출산휴가급여]

- 「고용보험법」 제76조(지급 기간 등)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「근로기준법」의 통상임금(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

[구직급여]

- 「고용보험법」 제45조(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)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(이하 "기초일액(基礎日額)")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함

 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함. 다만,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배아형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.go.kr